변경대비표

- 1. 투자신탁의 명칭: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
- 2. 변경 사유:
 -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변경
- 3. **효력발생(예정)일**: 2025 년 03 월 21 일
- 4. 변경 주요 내용:

[신탁계약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18조(투자대 상자산 취득한 도)	<생략> 1.~5.<생략> 6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5%</u> 이하로 한다.	<생략, 현행과 같음> 1.~5.<생략, 현행과 같음> 6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<u>40%</u> 이하로 한다.
제19조(운용 및 투자제한)	8.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.<생략><신설>	8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 (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법 제234조에 따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이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 9.<생략, 현행과 같음> 10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-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